



제 426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지원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53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전후 비교	7
2. 22대 국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中 긴급지원 관련 조문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3. 20.

다.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 제3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② (생략)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 도모하기 위한 지원임¹⁾. 이는 기존의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상담 지원, 다문화학생 교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

육지원 등 다양한 내용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²⁾.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기존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사업 간 연계 및 전문인력 간 협력³⁾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임.

현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⁴⁾. 이는 제정 당시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네 건의 제정안⁵⁾ 모두 모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6.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8.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9.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관리 관련 지원
10.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3) 참고자료1: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전후 비교」

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위기 요인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⁶⁾,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문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임.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가정폭력이나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적시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의 동의만으로 긴급지원을 실시할 수 있어,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개입

5) *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법률안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2202132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의원	'24.7.23.
220256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정성국 의원	'24.8.5.
220299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서일준 의원	'24.8.20.
220382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백승아 의원	'24.9.9.

6) 참고자료2: 「22대 국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中 긴급지원 관련 조문」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다문화·피학대 학생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현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 중, 근거 법률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이 유일한데,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동 법률에 신설되었고, 보호자가 지속적인 상담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⁷⁾,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긴급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아동복지법」은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보호자가 아동 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⁸⁾.

7)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3. 1.] 제18조의5

다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⁹⁾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긴급지원이 해당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 실시 근거가 기 마련되었으므로, 유사한 사안에 별도의 절차를 둘 경우 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 후 현장 안착 정도를 토대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4

8)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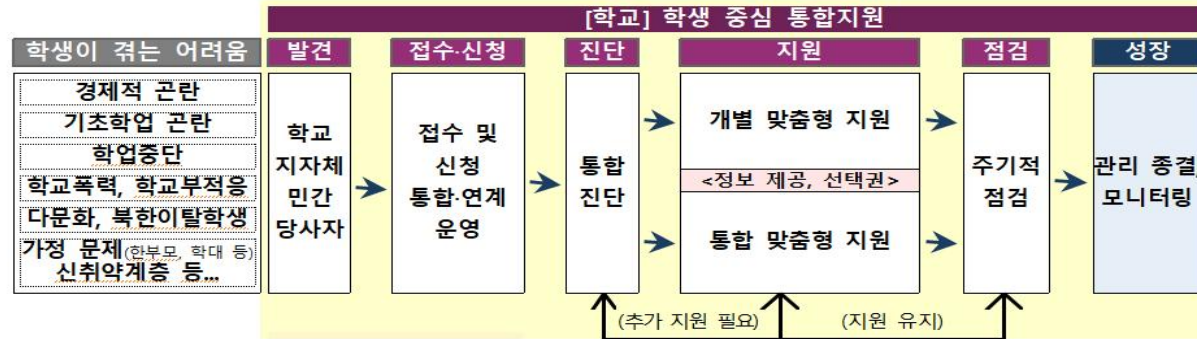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후 비교¹⁰⁾

구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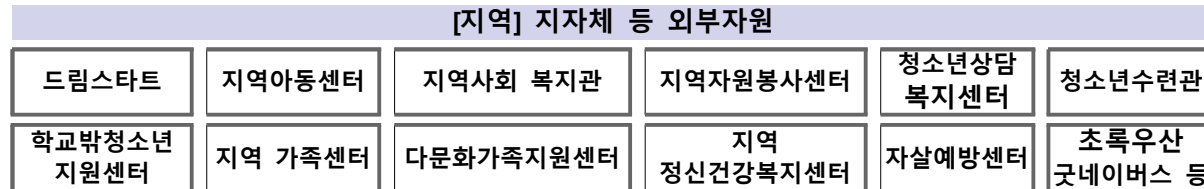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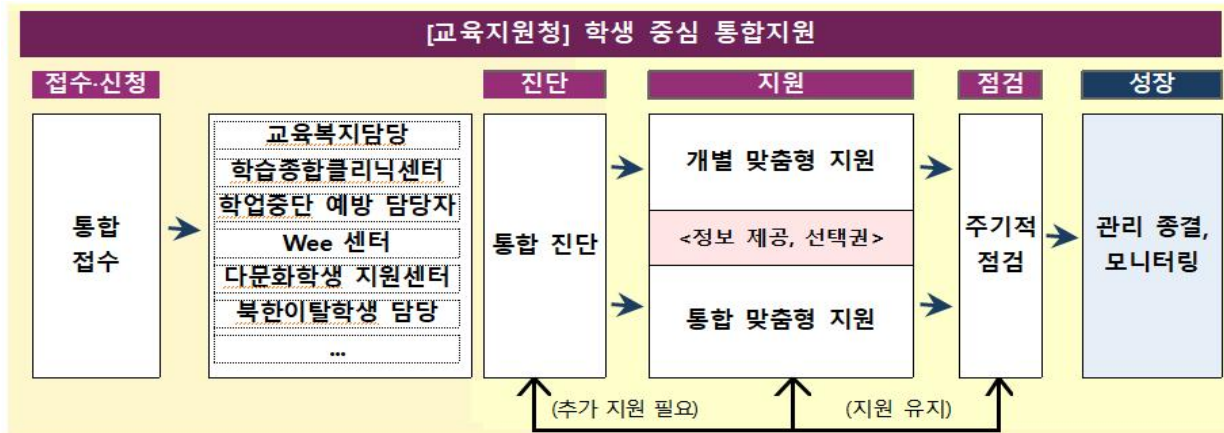
학생이 겪는 어려움	[학교] 사업별 담당자가 발견 및 지원	[교육지원청] 사업별 전문지원
경제적 곤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견→진단→지원→모니터링]	→ 교육복지안전망
기초학업 곤란	기초학력 지원 [발견→진단→지원→모니터링]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업중단	학업중단숙려제 [의뢰→진단→지원]	→ 학업중단 예방 담당자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Wee 클래스 [발견·신청→진단→상담]	→ Wee 센터
다문화, 북한이탈학생	다문화, 북한이탈학생 지원 [발견·신청→진단→지원]	→ 다문화학생지원센터 및 담당자
가정 문제(학대, 가족해체 등) 신치약계층 등...	...	→ ...

10) 자료: 교육부

구축 후



❑ < 고위기, 복합적 어려움 학생 >



참고자료 2

22대 국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中 긴급지원 관련 조문

김문수 의원안	정성국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백승아 의원안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② <u>교육감</u>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u>교육감</u> 및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③ <u>교육감, 교육장</u>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교육감, 교육장</u>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u>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 중에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위기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특별히</u>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③ <u>교육감, 교육장</u>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교육감, 교육장</u>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김문수 의원안	정성국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백승아 의원안
· 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u>있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u> 경우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만, <u>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u>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u>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 위원회에 보고한 후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u>	만, <u>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u>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